

15. 광물세(mineral tax)

광물세의 과세대상은 석탄, 砂金,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 화산재, 혈암, 점토, 규조토 등의 광물이다. 석탄과 일반광물은 순 현금매출(net current proceeds)의 2% 또는 순수입(net revenue)의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금은 광물 판매가의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III. Québec주의 세제

Québec주의 2001-2002 회계연도⁴⁾ 총세입을 세입원별로 보면 소득세(personal income tax)가 38.8%, 소비세가 23.7%, 법인세 20.8%, 세외수입 9.1%, 공기업 수입 7.8%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세제(consumption taxes)

1. 판매세(Québec Sales Tax : QST)

판매세는 소매세를 대체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되었으며, Québec주의 기간 세목이다. 주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세인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 GST)와 QST가 과세되며, 세율은 GST 7%, QST 7.5%이다. 처방이 필요한 약품과 일반 기초 식료품은 GST의 과세대상이 되나, QST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Québec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약에 의해 GST와 QST의 세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gistrant)는 과세대상 물품과 용역을 판매시에 GST와 QST를 징수하여 주정부 세입국에 납부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며 GST와 QST의 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다만, 신축주택이나 상업용건물의 판매에 따른 GST의 징수의무는 진다).

GST에는 투입세액공제제도(input tax credit)가, QST에는 모든 제품과 거래단계마다 과세되기 때문에 투입세액환급(input tax refund)제도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고 공제나 환급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도는 다단계 과세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cascade tax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판매세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세무행정을 용이하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T의 세율은 7%이고, QST의 세율은 7.5%이다. 특이한 것은 QST의 과표는 판매가에 GST를 더하여 산출한다는 점이다.

2. 보험세(Taxes on Insurance)

4)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 개시된다.